



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·초본 교부 신청서

※ 3쪽의 유의 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, 해당하는 내용 앞의 []에 √표를 합니다. (3쪽 중 1쪽)

신청인 (개인)	성명 김기흥 (서명 또는 인)	주민등록번호 900101-1234567
	주소 용인시 (시·도) 기흥구 (시·군·구)	
	대상자와의 관계 자녀/부모/수입자/이해관계인 등	연락처 010-1234-5678
	[] 수수료 면제를 신청함 ※ 수수료 면제 대상에 대해서는 3쪽 유의사항 3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	
신청인 (법인)	기관명	사업자등록번호
	대표자 (서명 또는 인)	연락처
	소재지	
	방문자 성명	주민등록번호
열람 또는 등·초본 교부대상자	※ 신청인이 본인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·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.	
	성명 박처인	주민등록번호 800101-1234567
	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, 201동 202호	

👉 뒤쪽에 작성란 있습니다.

신청내용	열람 <input type="checkbox"/> 등본 사항 <input type="checkbox"/> 초본 사항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
	※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아래의 등·초본 사항 중 필요한 사항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 포함 여부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 또는 교부 대상자의 성명, 생년월일, 주소 등 기본적인 사항만 제공됩니다. <input type="checkbox"/> 등본 사항 전부 포함 <input type="checkbox"/> 초본 사항 전부 포함
	1.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<input type="checkbox"/> 전체 포함 <input type="checkbox"/> 직접 입력: 최근__년 포함
	2. 세대 구성 사유 <input type="checkbox"/> 포함
	3. 세대 구성 일자 <input type="checkbox"/> 포함
	4. 발생일 / 신고일 <input type="checkbox"/> 포함
	5. 변동 사유 <input type="checkbox"/> 포함(<input type="checkbox"/> 세대, <input type="checkbox"/> 세대원)
	6. 교부 대상자 외 세대주·세대원·외국인등의 이름 <input type="checkbox"/> 포함
	7.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<input type="checkbox"/> 포함(<input type="checkbox"/> 본인, <input type="checkbox"/> 세대원)
	8.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<input type="checkbox"/> 포함
	9. 동거인 <input type="checkbox"/> 포함
	1. 개인 인적 사항 변경 내용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포함
	2.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전체 포함 <input type="checkbox"/> 직접 입력: 최근__년 포함
	3.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<input type="checkbox"/> 포함
	4.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포함
	5.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포함
	6. 발생일 / 신고일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포함
	7. 변동 사유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포함
8. 병역 사항 <input type="checkbox"/> 포함(<input type="checkbox"/> 기본(입영/전역일자), <input type="checkbox"/> 전체)	
9. 국내거소신고번호 / 외국인등록번호 <input type="checkbox"/> 포함	

용도 및 목적 **관공서 제출**
 증명자료 **가족관계증명서/보정명령서 등**

「주민등록법 시행령」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·초본 교부를 신청합니다.
2025년 11월 1일
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읍·면·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
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※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서류 앞의 []에 √표를 합니다. <input type="checkbox"/> 1. 신청인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·초본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신분증명서 및 「주민등록법 시행규칙」 별표 1에 따른 증명서류
	<input type="checkbox"/> 2. 신청인의 수급자 정보, 독립유공자 정보, 국가유공자 정보,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정보, 참전군인 정보, 5·18민주유공자정보, 특수임무수행자 정보,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
	※ 담당 공무원이 본인정보 제공 요구 및 공동이용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서류 앞의 []에 √표를 합니다. <input type="checkbox"/> 3.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

본인정보 제공 요구서
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의2,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7조의3 및 제7조의4에 따라 공동이용을 위한 본인정보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 신청인 **김기흥** (서명 **김기흥** 인)

법원행정처장 귀하

본인정보 공동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※ 해당란에 √ 표시합니다.

1.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해 민원처리 기관의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 2.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※ 신청인이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 신청인 **김기흥** (서명 **김기흥** 인)

유의 사항

1.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·초본 교부 신청인은 주민등록증(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)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하며, 신청인이 「출입국관리법」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한 한 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. 또한 법인 방문자인 경우에는 방문자의 신분증명서와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.
2. 본인·세대원이 본인·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·초본 교부를 주민등록증(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) 등 신분증명서만을 제시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“전자 이미지 서명 입력기”에 자필 한글 성명으로 서명하여야 열람 또는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.
3. 「주민등록법 시행규칙」 제18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·초본 교부 신청 수수료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.
 - 가.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경우
 - 나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
 - 다. 재해의 발생 등 행정안전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 - 라. 관계 법령에서 주민등록자료 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한 규정이 있는 경우
 - 마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(선순위자만 해당됩니다)이 신청하는 경우
 - 바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(선순위자만 해당하되,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합니다)이 신청하는 경우
 - 사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
 - 아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
 - 자. 「5·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·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(선순위자만 해당하되,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합니다)이 신청하는 경우
 - 차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(선순위자만 해당하되,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합니다)이 신청하는 경우
 - 카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
 - 타. 미성년자인 자녀(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,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가족의 경우에는 손자녀를 말합니다)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
 - 파. 출생신고된 사람의 초본을 최초 1통 발급하는 경우
 - 하.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경우
4. 신청인은 “신청 내용”란의 각 항목에서 “포함”여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5. 상속 등기 대위 신청을 위하여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을 포함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발급할 수 있습니다.
6. “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”을 “직접 입력”으로 선택하는 경우, 그 기간은 1년 단위로 해야 합니다.
7. 초본 교부를 신청할 때 “3.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” 항목은 대상자가 성년인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,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세대주 또는 직계존속,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한 경우에만 “포함”을 선택할 수 있고, “8. 병역사항” 항목은 본인이나 세대원(그 위임을 받은 사람 포함), 「주민등록법」 제2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가족,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한 경우에만 “포함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
8.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사람이 교부받는 등·초본에는 작성하신 용도 및 목적이 표시되니 반드시 “용도 및 목적”칸을 작성하여야 하며, 등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증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9. 「주민등록법」 제37조제5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·초본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.
10. 한 신청자가 하나의 증명 자료를 가지고 같은 목적으로 여러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·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과 별지 제8호서식을 함께 사용하여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과 별지 제8호서식 사이에는 신청인의 간인(서명 포함)이 있어야 합니다.
11. 신청인이 「출입국관리법」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칸에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